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15호

2026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2026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공무직근로자	시설물관리원	1명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84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시설물 유자관리업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

○ **근무지**: 국립밀양기상과학관(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4)

○ **근무기간**: 2027.1.4.~정년(60세)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체계, 근무시간 및 보수**

직무분야	근무체계	근무시간	보수	비고
시설물관리원	**주 5일 근무**	**09:00~18:00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약 259만원 (월급제)	※ 기본급 및 식비 포함 ※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조

○ 필수 자격요건[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구분	응시자격요건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서,
자격증	시설 관련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우대요건
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시설물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	필수요건의 시설관련* 자격증 중 두 개 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10점) * 소방, 전기, 가스, 건축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최대 3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시설물관리원 / 시설 내외부 시설물업무 / 주00시간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6.10.26.)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 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에 해당하지 않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요건(나이,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충족하는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 시] 자체 서류전형 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35~27	26~18	17~9	8~0

자기소개서(최대 3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35~27	26~18	17~9	8~0

직무수행계획서(최대 35점)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20	15	10	5	0

우대요건(경력)(최대 20점)

필수요건의 시설관련* 자격증 중 두 개 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소방, 전기, 가스, 건축

우대요건(자격증)(10점)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10. 26.(월) ~ '26. 11. 5.(목)	'26. 10. 30.(금) ~ '26. 11. 5.(목)	'26. 11. 20.(금)	'26. 12 3.(목)/ 부산지방기상청	'26. 12. 1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 ~ 11. 5.(목) 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ejbae00@korea.kr)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6. 11. 5. (목)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시설물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공무직(시설물관리원) 응시원서_OOO'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붙임4] 서식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5]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리스트(확인서) ※ [붙임6] 서식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8	응시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9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우대요건)		
10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 제출
11	(필수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응시요건과 관련된 추가 자격증 사본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www.kma.go.kr)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 란**에 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2026.10.26.)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8]를 작성 전자우편(ejbae00@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예비합격자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붙임7]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1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시설물관리원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경남 밀양시)	1명	2027. 1. 4. ~ 정년(60세)

주요업무	○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 -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 ○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 점검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실적 점검 ○ **기타 과학관 전시물·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협업의식), 의사소통능력 ○ **(직무분야 역량)** 시설물 관리분야 전문지식,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필요지식	○ 시설물 관리(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전반에 관한 지식 등 ○ 안전사고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등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경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필수요건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서, ○ 시설 관련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우대요건 (서류전형 적용)	○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시설물관리 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기간별 차등 우대) ○ **(자격증)** 필수요건의 시설관련* 자격증 중 두 개 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10점) * 소방, 전기, 가스, 건축
기타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우대요건의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전자우편 (e-mail)			

2.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 기입*

근무기관 (근무부서, 연락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②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③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④ 연락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⑤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⑥ 경력사항: 우대요건 해당 업무 경력(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기재(해당자만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경력사항의 경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자필서명 필수(e-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2]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성자 (인/서명)

[붙임3]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성자 (인/서명)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 · 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4]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필수) 채용 응시 대상자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등 확인
(해당 시) 응시자격, 우대요건 확인 및 채용심사자료	병역사항, 자격증 진위, 직무분야 경력(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보관 후 폐기
   -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3. 수집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조회를 위하여 해당 업무 취급기관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경력, 자격증, 면허 사항 등) 확인 기관
   - 제공목적 :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자격 확인)
   - 제공항목 :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필수(전자우편 접수: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붙임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시설물 관리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붙임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붙임7]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붙임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